

國檢閱(에) 발송되든 文書의 내용을 검토하

건대 불비(不備)한 情의 하여 發見되
므로 非의적(非的)으로 觀의 疑心(疑心)을

손상케 하는 사례(事例)가 있으나 이후 주권
의 국기관(駐韓의 國檢閱)에 발송되든 公送되든

그 내용의 정중(敬重)을 失하고 반드시
갑류(甲類) 文書(文書)의 處理의 法裁(法裁)도 甚

할 것이라 신상(新商)에 정서(定書)는 法裁(法裁)은

(英文)으로 작성하여 총독부의 문서제외

환의(准認)을 받은 후 시행토록(만)

유류의(對)기(對)은 기(對)시(對)양

(의(對)은)

